

## 교육과정혁신센터규정

2019.04.30. 제정      2020.03.01. 일부개정      2020.06.28. 폐지

<교육과정확산센터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 발전계획 및 혁신방안을 다루기 위한 교육과정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3.1.)

**제2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교육정책 수립 및 학사제도 개선안 발굴
2. 교육과정 기본 정책수립
3. 전공교육과정 연구 개발
4. 교양교육과정 연구 개발
5. 자기설계 교육과정 개발
6. 종합만족도조사 및 수요도조사
7. 교육만족도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환류
8. 산업계관점 학과평가
9. 수업성과관리 모델 연구
10. RE-CREATE 교육성과 체계 및 체제 개선
11. 그 밖에 대학의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교육과정혁신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0.3.1.)

- ② 센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초빙교수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- ③ 센터는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실에 소속되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총괄한다
- ④ 초빙교수는 센터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·분석, 성과관리,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- ⑤ 직원 및 조교는 센터의 행정업무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4조(보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28일부터 폐지한다.